

Issue Brief on Foreign Laws

최신외국법제정보

일본의 공공조달, 국가계약, 예산집행 관련 법령조사

▶ 김수홍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Issue Brief on Foreign Laws

최신외국법제정보

일본의 공공조달, 국가계약, 예산집행 관련 법령조사

▶ 신청기관 법무법인 민후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7

Global Issue Paper

※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외국의 입법례 조사를 의뢰받아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에서 발간합니다.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법제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04	I 머리말
05	II 일본의 공공조달과 국가계약 관련 법령
17	III 일본의 예산집행 관련 법령
20	IV 맺음말
21	참고문헌
22	부록

I. 머리말

- 공공계약(Public Contract)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 독립의 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 ▶ 이러한 계약에는 공사의 하도급, 업무의 위탁 등의 계약, 재산의 매도계약 등 다양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음
- 한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을 개별 법률로 제정하고 있음
- 한편 일본에서는 회계법, 지방자치법, 공공공사입찰계약적정화법, 입찰담합등관여행위방지법(관제담합방지법), 공계약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일본의 공공조달과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함

II. 일본의 공공조달과 국가계약 관련 법령

1. 회계법¹⁾

- 회계법은 국가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제4장 계약(제29조-제29조의12)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 성청의 장이 관리하는 것(제29조), 계약담당관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직원을 분임계약담당관으로 부르는 것(제29조의2)등 조직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 제29조의3은 계약의 방법에 대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경쟁의 방법은 입찰에 의한 것이 원칙이며,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를 인정하고 있음(제29조의5). 그 밖의 경쟁의 경우 상대방의 결정방법(제29조의4) 및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제29조의7)을 규정하고 있음
 - ▶ 제29조의8은 계약담당관 등이 계약의 상대방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담당관 등이 계약의 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지 않으면 해당계약은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특별히 정하고 있음(제2항)
 - ▶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은 계약보증금 및 그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제29조의11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검사에 대해 정하고 있고,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규정(제29조의12)은 동일년도 내 채무부담·지출원칙을 특례로 마련한 것임

제정 : 소화 22년 3월 31일 법률 제35호

최종개정 : 평성 29년 6월 2일 법률 제45호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수입(제3조-제9조)

제3장 지출부담행위 및 지출(제10조-제28조)

제1절 총칙(제10조)

제2절 지출부담행위(제11조-제13조의5)

제3절 지출(제14조-제27조)

제4절 지불(제28조)

제4장 계약(제29조-제29조의12)

1) 會計法(昭和22年3月31日法律第35号)

제29조 각 성청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그 소관에 관한 매매, 대차, 도급, 기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29조의2 ① 각 성청의 장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각 성청의 소속 직원에 전항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각 성청의 장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각성청 소속 직원에 전항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각 성청의 장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각 성청 소속 직원 또는 다른 각 성청 소속 직원에게 계약담당관(각 성청의 장 또는 제1항 혹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동일하다)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시킬 수 있다.

④ 제4조의2 제4항의 규정은 전 3항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직원은 분임계약담당관(分任契約擔當官)이라 한다.

제29조의3 ① 계약담당관 및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이하 “계약담당관 등”이라 한다)은 매매, 대차, 도급, 기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하여 신청에 의해 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쟁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과 동항의 공고의 방법, 그 밖의 동항의 경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이를 정한다.

③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한 경쟁을 하려는 자가 소수(少數)로 제1항의 경쟁에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 및 동항의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부치는 것으로 한다.

④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이 경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긴급의 필요에 의한 경쟁에 붙일 수 없는 경우 및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⑤ 계약과 관련된 예정가격이 소액일 경우, 그 밖에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9조의4 계약담당관 등은 전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경쟁에 붙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경쟁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자의 견적계약금액의 백분의 오(5/10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증금 납부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 또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그 밖의 담보의 제공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의5 ① 제29조의3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이하 “경쟁”이라고 한다)은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 경매에 붙일 때를 제외하고 입찰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9조의6 ① 계약담당관 등은 경쟁에 붙이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에 따라 예정가격 제한의 범위 내에서 최고 또는 최저의 가격으로 신청 한 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국가의 지불의 원인이 되는 계약 중에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될 자가 신청한 가격에 의할 때에는 그 자에 의한 해당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 제한의 범위 내의 가격으로 신청을 한 그 외의 자 중 최저가격으로 신청을 한 자를 해당 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과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과의 교환에 관한 계약, 그 밖에 그 성질 또는 목적으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어려운 계약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이 국가에 가장 유리한 것(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으로 유리한 것)으로 신청을 한 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의7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해 납부된 보증금(그 납부에 대신하여 제공된 담보를 포함한다) 중 낙찰자(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다음 조에서는 동일하다)의 납부에 관련된 것은 그 자가 계약을 맺지 않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29조의8 ① 계약담당관 등은 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했을 때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한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관 등이 계약 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확정하지 않는다.

제29조의9 계약담당관 등은 국가와 계약을 맺는 자로 하여 계약금액의 백분의 십(10/100) 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납부의 연기가 인정되는 경우에 확실한 담보가 제공될 때 그 자가 물품의 매물대금을 즉납하는 경우 다른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②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계약 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의10 전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한 계약 보증금(그 납부에 대신하여 제공된 담보를 포함한다)은 이를 납부한 자가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에 대한 계약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의11 ① 계약담당관 등은 공사 또는 제조, 그 밖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보조자에게 명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계약담당관 등은 전항에서 규정한 도급계약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계약에 대해서는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보조자에게 명하여 수령하는 급부의 완료를 확인(급부의 완료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행하는 공사 혹은 제조의 기제부분 또는 물건의 기납부분의 확인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③ 전 2항의 경우 계약의 목적인 물건의 급부의 완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물건을 파손, 변질, 성능 저하, 그 밖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교체,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고, 해당 급부내용이 담보된다고 인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감독 또는 전항의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각 성청의 장은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감독 및 제2항의 검사를 해당계약과 관련된 계약담당관 등 및 그 보조자 이외의 해당 각 성청 소속직원 또는 다른 각성청 소속직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⑤ 계약담당관 등은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직원 이외의 자에게 제1항의 감독 및 제2항의 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12 계약담당관 등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 연도 이후의 전기, 가스 혹은 물의 공급 또는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년도에 있어 이들의 경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급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5장 시효(제30조-제32조)

제6장 국고금 및 유가증권(제33조-제37조)

제7장 출납관사(제38조-제45조)

제8장 잡칙(제46조-제50조)

부칙

2. 지방자치법²⁾

- 지방자치법 제2편 제9장 제6절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제234조), 계약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제234조의2),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사항(제234조의3) 등 세 개 조문을 두고 있음

2) 地方自治法(昭和22年4月17日法律第67号)

제6절 계약

제234조(계약의 체결)

- ①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체결한다.
- ② 전항의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또는 경매는 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이에 의할 수 있다.
- ③ 일반 지방공공단체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하 이 조에서 “경쟁 입찰”이라 한다)에 붙이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계약의 목적에 따라 예정가격 제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 또는 최저의 가격으로 신청을 한 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반 지방공공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 제한의 범위 내의 가격으로 신청을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신청을 한 자 이외의 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
- ④ 일반 지방공공단체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을 납부시킨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의 납부에 관한 입찰보증금(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 대신하여 제공된 담보를 포함한다)은 해당 일반 지방공공단체에 귀속한다.
- ⑤ 일반 지방공공단체의 계약에 있어 계약서 또는 계약내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의 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고, 계약내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에 해당 일반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 받은 자 및 계약의 상대방의 작성에 관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강구하는 조치로서 해당 전자적 기록이 개변(改變)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이들의 작성에 관한 것임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강구하지 않으면 해당계약은 확정되지 않는다.
- ⑥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경쟁입찰의 공고 또는 지명의 방법, 수의계약 및 경매의 절차, 그 밖의 계약의 체결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제234조의2(계약의 이행 확보) ① 일반 지방공공단체가 공사 혹은 제조, 그 밖의 도급계약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적정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령할 급부의 완료를 확인(급부의 완료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행하는 공사 혹은 제조의 기체부분 또는 물건의 기납부분의 확인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일반 지방공공단체가 계약의 상대방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시킨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를 대신하여 제공된 담보를 포함한다)은 해당 일반 지방공공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에 대한 계약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34조의3(장기계속계약) 일반 지방공공단체는 제21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이후의 전기, 가스 혹은 물의 공급 또는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 또는 부동산을 빌리는 계약, 그 밖에 정령에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 년도 이들의 경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급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3. 공공공사입찰계약적정화법³⁾

- 공공공사입찰계약적정화법은 국가, 특수법인 및 지방공공단체가 하는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대하여 그 적정화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정보의 공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적정한 금액으로의 계약체결 등을 위한 조치 및 시공체제의 적정화의 조치를 강구하고 적정화지침의 책정 등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공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확보와 도급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제정 : 평성 12년 11월 27일 법률 제127호
 최종개정 : 평성27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정보의 공표(제4조-제9조)
 제3장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제10조·제11조)
 제4장 적정한 금액의 계약체결 등을 위한 조치(제12조·제13조)
 제5장 시공체제의 적정화(제14조-제16조)
 제6장 적정화지침(제17조-제20조)
 제7장 국가에 의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등(제21조·제22조)
 부칙

3)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12年11月27日法律第127号)

(1) 대상공사

- 공공공사입찰계약적정화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 특수법인 등 및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도로, 하천, 항만, 하수도 등의 공공사업에 관련된 발주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 따라서 공립학교나 병원, 관공서시설 등의 시설정비나 공무원 숙소(宿舎)의 정비 등도 포함됨

(2) 입찰·계약의 적정화의 기본이 되는 사항

-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은 다음의 사항을 기본으로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 ▶ 입찰·계약의 과정, 내용의 투명성의 확보
 - ▶ 입찰참가자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
 - ▶ 담합, 그 밖에 부정행위의 배제의 철저
 - ▶ 공공공사의 적정한 시공의 확보

(3) 모든 발주자에 대한 의무조치

- 매년도의 발주전망의 공표
 - ▶ 발주자는 매년도, 발주전망(발주공사명, 입찰·계약의 방법, 입찰예정시기 등)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됨
 - ▶ 국가, 특수법인 등 및 지방공공단체의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예정가격이 소액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 입찰·계약에 관련된 정보의 공표
 - ▶ 입찰·계약의 과정(입찰참가자의 자격, 입찰자·입찰금액, 낙찰자·낙찰금액 등) 및 계약의 내용(계약의 상대방, 계약금액 등)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됨
 - ▶ 이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전망과 같은 국가, 특수법인 등 및 지방공공단체의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예정가격이 소액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 ▶ 발주자는 담합이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됨
 - ▶ 발주자는 일괄도급 등이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허가행정청 등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됨
- 시공체제의 적정화
 - ▶ 공공공사에 있어서 일괄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건설업법에서는 일괄도급을 금지하지 않지만, 발주자에 의한 서면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가 해제됨
 - ▶ 그러나 공공공사입찰계약적정화법에서는 공공공사에 있어 엄격한 입찰·계약절차를 거쳐 계약 상대방이 선정되기 때문에 일괄도급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전면적으로 금지함
 - ▶ 발주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시공체제대장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실제로 공사현장의 점검을 발주자가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 발주자는 시공체제도를 공사관계자, 공중(公衆)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됨
 - ▶ 발주자는 수주자의 시공체제의 상황의 점검, 그 밖에 시공체제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됨

(4) 적정화지침의 책정

- ▶ 모든 발주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곤란한 사항인 경우에도 입찰 및 적정화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적정화지침을 책정함과 아울러 그 실효성의 높이기 위한 조치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 등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적정화지침의 각의결정**

- ▶ 국토교통대신, 총무대신 및 재무대신은 관계성청에 협의하고 적정화지침의 각의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또한 국토교통대신은 사전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함

● **적정화지침의 내용**

- ▶ 입찰·계약의 과정, 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관한 것(공공공사입찰계약적정화법에 의한 의무사항이외의 경쟁참가자의 평점, 등급구분의 결정방법 등)
- ▶ 입찰계약의 과정 등에 대하여 유식자 등의 제3자 의견을 반영시키는 방안에 관한 것(예를 들면, 입찰감시위원회의 설치, 지방공공단체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활용 등)
- ▶ 고충처리의 방안에 관한 것(예를 들면, 지명되지 않았던 자로부터의 비지명이유의 설명요구에의 대응 등)
- ▶ 입찰·계약의 방법의 개선에 관한 것(예를 들면, 적절한 심사체제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의 실시, 공모형 등의 지명경쟁입찰의 실시 등)
- ▶ 공사의 시공상황의 평가에 관한 것(예를 들면, 공사성적평가의 실시와 활용 등)
- ▶ 그 밖에 입찰·계약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것

● **적정화지침의 후속조치**

- ▶ 국토교통대신, 총무대신 및 재무대신은 매년도 발주자에 의한 조치상황을 파악·공표함과 아울러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선요청을 하는 것으로 함

(5) 국가에 의한 정보의 수집, 제공 등

- ▶ 국토교통대신, 총무대신 및 재무대신은 이 법률에 의해 공표되는 정보, 그 밖에 입찰·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정보의 수집, 제공 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됨
- ▶ 국가, 특수법인 등 및 지방공공단체는 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시공기술에 관한 지식의 습득에 노력하여야 함
- ▶ 국토교통대신 및 도도부현지사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에 노력하여야 함

4. 입찰담합등관여행위방지법⁴⁾

- 입찰담합등관여행위방지법(관계담합방지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각 성청의 장 등에 대하여 입찰담합등 관여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조치의 요구, 입찰담합등관여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해당직원에게 관련된 징계사유의 조사, 관계 행정기관의 연계협력·입찰담합등관여행위를 배제·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정함과 아울러 직원에 의한 입찰 등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제정 : 평성 14년 7월 31일 법률 제101호

최종개정 : 평성27년 9월 9일 법률 제54호

제1조(취지)

제2조(정의)

제3조(각성청의 장 등에 대한 개선조치의 요구 등)

제4조(직원에게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

제5조(직원에게 관련된 징계사유의 조사)

제6조(지정직원에게 의한 조사)

제7조(관계행정기관의 연계협력)

제8조(직원에게 의한 입찰 등의 방해)

제9조(운용상의 배려)

제10조(사무의 위임)

부칙

(1) 주요내용

- 대상이 되는 발주기관(제2조 제1항-제3항)
 - ▶ 국가, 지방공공단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자본금의 1/2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이 대상임
- 입찰담합등관여행위(제2조 제4항, 제5항)
 - ▶ 직원이 입찰담합 등에 관여하는 행위로 담합의 명시적인 지시, 발주자에 관한 의사표명, 발주에 관련 비밀정보의 누설 및 특정의 담합의 방조를 규정하고 있음

4)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平成14年7月31日法律第101号)

● 발주기관이 강구하는 개선조치(제3조)

-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주자인 사업자측에 대하여 입찰담합의 조사결과, 입찰담합등관여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배제를 위한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해당요구를 받은 발주기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됨
- ▶ 발주기관이 한 조사결과 및 개선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공표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됨
-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결과와 발주기관의 조사결과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손해배상(제4조)

- ▶ 발주기관은 입찰담합등관여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등을 조사한 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됨

● 징계(제5조)

- ▶ 발주기관은 해당직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됨
- ▶ 또한 이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됨

● 지정직원에 의한 조사(제6조)

- ▶ 발주기관이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할 때 그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제6조의 조사를 실시하는 직원을 지정할 의무가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협력규정 등(제7조, 제9조 및 제10조)

- ▶ 제7조에 있어 입찰담합등관여행위의 방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연계협력, 제9조에 있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지방공공단체 등의 자주적인 노력에의 운용상의 배려, 제10조에 있어 각 성청의 장은 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무를 해당 각 성청의 외국(外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직원에 의한 입찰 등의 방해(제8조)

- ▶ 발주기관직원이 발주기관이 입찰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그 직무에 반하고 입찰담합을 부추기는 것, 예정가격, 그 밖에 입찰 등에 관한 비밀을 교시(敎示)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입찰 등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행정상의 조치

● 입찰담합등관여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제3조)

- ▶ 입찰담합등관여행위가 있었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 성청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구, 해당요구를 받은 각 성청의 장 등에 의한 조사의 실시·필요한 조치의 검토,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해당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배상청구(제4조), 징계사유의 조사(제5조)

- ▶ 각 성청의 장 등에 의한 해당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징계사유의 조사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협력규정 등(제7조, 제9조 및 제10조)

- ▶ 입찰담합등관여행위의 방지를 위해 관계행정기관 상호의 연계·협력, 본법 운용상의 지방공공단체 등의 자주적인 노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입찰 등의 공정을 해한 직원에 대하여 처벌(제8조)

- ▶ 입찰 등의 공정을 해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 이 규정은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수사의 결과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정에 기초하여 일정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님

5. 공계약 조례

(1) 공계약 조례의 의의

- 공계약 조례란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공사나 업무위탁 등의 계약의 조항에 해당 공계약에 의한 사업에서 노동자의 임금 등의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노동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적정한 노동조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례를 말함

(2) 치바현 노다시(野田市)의 공계약조례

- 일본 치바현 노다시에서 2009년 9월에 처음으로 공계약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2월부터 시행함
 - ▶ 치바현 노다시의 공계약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공계약조례가 확대되고 있음
- 이 조례는 공계약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적정한 노동조건을 확보함으로써 해당업무의 질의 확보 및 공계약의 사회적인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로써 시민이 풍족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특히 이 조례는 공계약(노다시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제조, 그 밖에 도급계약)의 수주자, 하도급자 및 수주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노동자를 파견하는 자는 공계약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 정한 임금의 최저액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노다시의 공계약조례

평성 21년 9월 30일
노다시 조례 제25호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수주자 등의 책무)
 - 제4조(공계약의 범위)
 - 제5조(노동자의 범위)
 - 제6조(적용노동자의 임금 등)
 - 제6조의2(적용노동자의 신청)
 - 제7조(적용노동자에의 주지)
 - 제8조(수주자의 연대책임 등)
 -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 제10조(시정조치)
 - 제11조(공계약의 해제)
 - 제12조(공표)
 - 제13조(손해배상)
 - 제14조(위약금)
 - 제14조의2(노다시 공계약심의회 설치)
 - 제14조의3(조직)
 - 제14조의4(위원)
 - 제14조의5(회장)
 - 제14조의6(회의)
 - 제14조의7(의견의 청취 등)
 - 제15조(종합평가일반경쟁입찰 등의 조치)
 - 제16조(저입찰가격조사제도의 확충 등의 조치)
 - 제17조(위임)
 - 제18조(수도사업에의 적용)
- 부칙

Ⅲ. 일본의 예산집행 관련 법령

헌법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

●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의 통제

- ▶ 국가가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안 됨
- ▶ 지방공공단체에서도 예산의 의회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고, 중요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자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함(지방자치법 제96조 제1항 제5호-제9호)

1. 예산의 배부

●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 의결을 거쳐 성립함

- ▶ 국회로부터 내각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권한이 부여되지만, 그 집행은 구체적으로 각 성청의 장의 책임으로 실행됨
- ▶ 이를 위해서 내각은 각 성청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할 예산의 배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예산의 배부라고 말함

재정법 제31조

- ① 예산이 성립한 때 내각은 국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각 성청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의 책임으로 담당해야 하는 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배부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항의 목(目)에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③ 재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부가 있었던 때에는 회계감사원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예산의 집행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 예산의 집행이란 각 성청의 장이 부여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 절차는 회계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예산이 배부되면 행정부는 예산의 집행의 책임을 맡게 됨

- ▶ 예산집행에 관한 책임자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사무를 관리하는 각 성청의 재무대신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각 성청의 장임
- ▶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사무는 세입에 있어서는 법령에 근거한 해당기관인 세입징수관, 수입관리 등에 위임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각 성청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자인 지출부담행위담당관, 지출관, 자금전도관리(資金前渡官吏) 등에 위임되고 있음

● 세출예산은 목적에 의해 항이 구분되어 있음

- ▶ 목적에 의한 분류는 어느 시책에 경비를 사용할지에 관한 예산사용의 목적에 따른 분류이고 그 중에는 인건비, 물건비, 보조비 등도 포함되고 있으며, 경비의 성질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음

재정법 제32조
 각 성청의 장은 세출예산 및 계속비에 대해서는 각 항에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 지출부담행위실시계획

● 지출부담행위실시계획이란 각 성청의 장에 배부된 세출예산,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공공사업비, 그 밖에 재무대신이 지정한 경비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각 성청에 있어서 지출부담행위를 하기 전에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무대신에 송부하고, 그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 ▶ 재무대신의 승인대상이 된 경비는 예산 중 공공사업비, 그 밖에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경비에 관련된 것에 한정됨

재정법 제34조의2

① 각 성청의 장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부된 세출예산,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공공사업비, 그 밖에 재무대신이 지정한 경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기초하여 생긴 지출부담행위(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동일하다)의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것을 재무대신에 송부하고 그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재무대신은 전항의 지출부담행위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이것을 각 성청의 장 및 회계검사원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계법 제12조

각 성청의 장은 재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부된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동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에 관련된 것에 기초하여 지출부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지출부담행위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지불계획

- 각 성청의 장은 지불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됨
 - ▶ 이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경비는 지출부담행위실시계획의 승인제도의 경우와 달리 모든 경비임
 - ▶ 재무대신은 지불계획의 승인제도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집행해야 함

재정법 제34조

- ① 각 성청의 장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부된 예산에 근거하여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출부담사무직원 마다 지출의 소요액(所要額)을 정하고 지불계획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것을 재무대신에 송부하고 그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재무대신은 국고금, 세입 및 금융의 상황, 경비의 지출상황을 감안하여 적당한 때 지불계획의 승인에 관한 방침을 작성하고 각의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 ③ 재무대신은 제1항의 지불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각 성청의 장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재무대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일본은행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IV. 맺음말

- 일본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는 한국의 공공조달법제와 달리 회계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 일본의 회계법령의 규정이 추상적이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입찰담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음

-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공사입찰계약적정화법, 입찰담합등관여행위방지법 등을 제정하였음
 - ▶ 2000년 공공공사입찰계약적정화법이 제정되어 입찰·계약의 과정이나 계약내용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고, 발주자측(공무원)의 입찰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2002년에 제정된 입찰담합등관여행위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관련 법제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권순미, 공공조달과 사회정책의 연계, 그리고 노동조합운동 -일본의 사례-, 사회과학논집 제47집 제1호, 2016년
- 이효경,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Ⅲ), 한국법제연구원, 2011년
- 小村武『予算と財政法』(新日本法規, 2016年)
- 芦部信喜『憲法[第6版]』(岩波書店, 2015年)
- 宇賀克也『地方自治法概説[第6版]』(有斐閣, 2015年)
- 塩野宏『行政法Ⅰ[第6版]』(有斐閣, 2015年)
- 宇賀克也『行政法概説Ⅰ[第5版]』(有斐閣, 2013年)
- 楠茂樹『公共調達と競争政策の法的構造』(上智大学出版, 2012年)
- 国土交通省「改正入札契約適正化法」(平成28年8月)
- 公正取引委員会事務局「入札談合の防止に向けて-独占禁止法と入札談合等関与行為防止法-」(平成29年10月)

부록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 : 평성 12년 11월 27일 법률 제127호

최종개정 : 평성 27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정보의 공표(제4조-제9조)

제3장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제10조·제11조)

제4장 적정한 금액의 계약체결 등을 위한 조치(제12조·제13조)

제5장 시공 체제의 적정화(제14조-제16조)

제6장 적정화 지침(제17조-20조)

제7장 국가에 의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등(제21조·제22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국가, 특수법인 등 및 지방공공단체가 하는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대해서 그 적정화의 기본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정보의 공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적정한 금액의 계약체결 등을 위한 조치 및 시공 체제의 적정화의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적정화 지침의 책정 등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공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확보와 도급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률에 있어 「특수법인 등」이라 함은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설립행위를 거쳐서 설립된 법인(총무성설치법(평성 11년 법률 제91호) 제4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을 제외한다),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동시에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법인 또는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평성 11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제6조에 있어서 동일하다) 중,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의 2분의 10 이상이 국가의 출자에 의한 법인 또는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주된 재원을 국가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에 의한 법인일 것.

2. 그 설립의 목적을 실현하거나, 또는 그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계속적으로 건설공사(건설업법(소화 24년 법률 제100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동일하다)의 발주를 하는 법인일 것.
- ② 이 법률에 있어 「공공공사」라 함은 국가, 특수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
- ③ 이 법률에 있어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 ④ 이 법률에 있어 「각 성청의 장」이라 함은 재정법(소화 22년 법률 제34호)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 성청의 대표를 말한다.

제3조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는 바에 따라 그 적정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입찰 및 계약의 과정 및 계약내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
2.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거나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
3. 입찰 및 계약으로부터의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의 배제가 철저히 될 것.
4. 도급대금액에 의한 때에는 공공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통상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계약을 방지할 것.

제2장 정보의 공표

제4조(국가에 의한 정보의 공표)

- ① 각 성청의 장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해당년도에 공공공사의 발주의 전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각 성청의 장은 전항의 전망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해당사항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조

각 성청의 장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하다.

1. 입찰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입찰금액, 낙찰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낙찰금액, 입찰의 참가자의 자격을 정했을 경우 해당자격,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한 자의 상호 또는 명칭,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상대방의 상호 또는 명칭, 계약금액,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공공공사의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제6조(특수법인 등에 의한 정보의 공표)

특수법인 등의 대표자(해당 특수법인 등이 독립행정법인일 경우 그 대표를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는 전 2조의 규정에 준하고,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조(지방공공단체에 위한 정보의 공표)

- ①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해당년도의 공공공사의 발주의 전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전항의 전망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해당사항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조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입찰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입찰금액, 낙찰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낙찰금액, 입찰의 참가자의 자격을 정했을 경우 해당자격,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한 자의 상호 또는 명칭,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상대방의 상호 또는 명칭, 계약금액,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공공공사의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전2조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가 전2조에 규정하는 사항이외의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조례로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장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지)

각 성청의 장, 특수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이하 “각 성청의 장 등”이라 한다)은 국가, 특수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소화 22년 법률 제54호) 제3조 또는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1조(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에의 통지)

각 성청의 장 등은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해당 공공공사의 수주자인 건설업자(건설업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는 해당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허가를 받은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 및 해당사실에 관련한 영업이 행하여지는 구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건설업법 제8조 제 9호, 제10호(동조 제9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11호(동조 제9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혹은 제13조(이들 규정을 동법 제17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혹은 제6호까지의 어느 것에 해당할 것.
- 2. 제15조 제2항 또는 제3항,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해서 적용되는 건설업법 제24조의7 제1항, 제2항 혹은 제4항 또는 동법 제26조 혹은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것.

제4장 적정한 금액의 계약체결 등을 위한 조치

제12조(입찰금액의 내역의 제출)

건설업자는 공공공사의 입찰에 관련된 신청을 할 때 입찰금액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각 성청의 장 등의 책무)

각 성청의 장 등은 도급대금액에 의할 때에는 공공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통상적으로 예상되지 않은 계약의 체결을 방지하고, 부정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전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확인,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장 시공체제의 적정화

제14조(일괄하도급의 금지)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시공체제대장의 작성 및 제출 등)

- ① 공공공사의 수주자에 관한 건설업법 제24의7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 규정 중 「특정건설업자」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자」라고 하고, 동조 제1항 중 「체결한 하청대금액(해당 하청계약이 2이상 일 때에는 도급대금액의 총액)이 정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에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청계약을 체결한」이라고 하고, 동항 중 「보기 쉬운 장소」라고 하는 것은 「공사 관계자가 보기 쉬운 장소 및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로 한다.
- ② 공공공사의 수주자(전항의 대체하여 적용된 건설업법 제24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항에 규정하는 시공체제대장(이하 “시공체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는 작성한 시공체제대장(동항의 규정에 의해 기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 사항으로 변경이 발생한 것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의 복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전항의 공공공사의 수주자는 발주자로부터 공공공사의 시공의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다음 조에서 “시공기술자”라고 한다)의 설치상황, 그 밖의 공사현장의 시공체제가 시공체제 대장의 기재에 일치하고 있는지의 점검이 요구되었을 때는 이것을 받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제16조(각 성청의 장 등의 책무)

공공공사를 발주한 국가 등에 관련된 각 성청의 장 등은 시공기술자의 설치의 상황, 그 밖의 공사현장의 시공체제를 적정한 것으로 하기 위해 해당 공사현장의 시공체제가 시공체제 대장의 기재에 일치하고 있는지의 점검이 요구되었을 때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장 적정화지침

제17조(적정화지침의 책정 등)

- ① 국가는 각 성청의 장 등에 의한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제2장, 제3장, 제13조 및 전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지침(이하 “적정화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적정화 지침에는 제3조 각 호에 열거하는 바에 의하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입찰 및 계약의 과정 및 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각 성청의 장 또는 특수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한 조치에 있어서는 제4조 및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장에 의한 조치에 있어서는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공표에 관한 것.
 - 2. 입찰 및 계약의 과정 및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학식경험을 가진 자 등의 제3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책에 관한 것.
 - 3.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 관한 고충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책에 관한 것.
 - 4.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도급대금액에 의할 때에는 공공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통상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계약의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입찰 및 계약의 방법의 개선에 관한 것.
 - 5. 장래의 보다 적절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한 공공 공사의 시공상황의 평가의 방책에 관한 것.
 - 6. 전 각호에 나열한 것 이외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것.
- ③ 적정화 지침의 책정에 있어 특수법인 등 및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④ 국토교통대신, 총무대신 및 재무대신은 미리 각 성청의 장 및 특수법인 등을 관할하는 대신에게 협의한 후 적정화 지침의 안을 작성하고, 각의의 결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⑤ 국토교통대신은 적정화 지침의 안의 작성에 앞서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⑥ 국토교통대신, 총무대신 및 재무대신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었을 때는 지체 없이 적정화 지침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⑦ 제3항에서 전항까지의 규정은 적정화 지침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18조(적정화지침에 근거한 책무)

각 성청의 장 등은 적정화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9조(조치상황의 공표)

- ① 국토교통대신 및 재무대신은 각 성청의 장 또는 특수법인 등을 관할하는 대신에 대하여 해당 각성청의 장은 해당 대신이 관할하는 특수법인 등이 적정화 지침을 따라 강구한 조치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대신 및 총무대신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적정화 지침을 따라서 강구한 조치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대신, 총무대신 및 재무대신은 매년도 전 2항의 보고를 정리하고, 그 개요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요청)

- ① 국토교통대신 및 재무대신은 각성청의 장 또는 특수법인 등을 관할하는 대신에 대하여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정화 지침에 비추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대신 및 총무대신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정화 지침에 비추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국가에 의한 정보수집, 정리 및 제공 등

제21조(국가에 의한 정보수집, 정리 및 제공)

국토교통대신, 총무대신 및 재무대신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정보, 그 밖의 그 보급이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2조(관련법령 등에 관한 지식의 습득 등)

- ① 국가, 특수법인 등 및 지방공공단체는 그 직원에 대하여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관계 법령 및 소관분야에 있어 공공공사의 시공기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국토교통대신 및 도도부현지사는 건설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지식의 보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칙

이하 생략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에서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외국의 법제와 관련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공 대상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법령 제·개정 정보, 입법적 쟁점, 제·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국가별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
- 개인적인 연구(예 : 학위논문 작성) 관련 신청 및 단순 법령 번역을 제외됩니다.
※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의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하기」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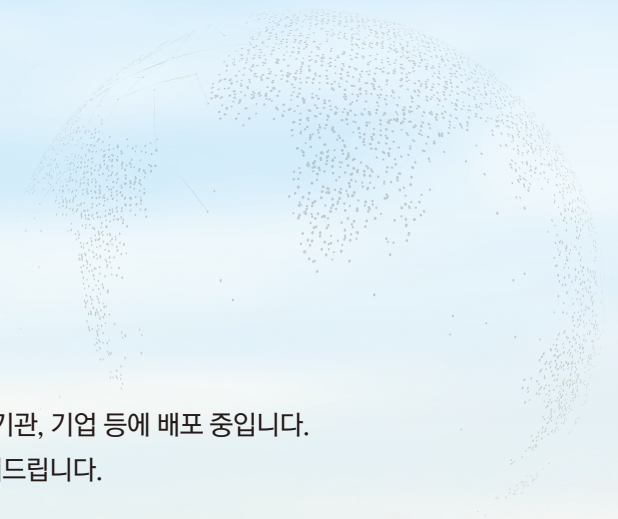
- **수시** (신청 접수 후 정보수집, 집필, 교정 및 감수기간 약 2개월 소요)

접수 및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 전화번호 : 044-861-0482, FAX : 044-868-9919
- E-mail : hphong@klri.re.kr, <http://www.klri.re.kr/>

배 포

- 비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ISSN 1976-0760

